

-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제2508호
------------	--------

2020. 10. 20.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 09. 28. 양천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0. 10. 07. 행정재경위원회

다. 상정일자 : 제28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2020. 10. 20.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회계·기금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예수하는 등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도록 함.
(안 제3조)
- 기금의 각 계정별 재원과 용도를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기금의 관리·운용 및 예탁·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도록 함.(안 제15조)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31일까지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한동석)

-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제정 조례입니다.

○ 주요내용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020년6월9일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이 폐지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에 맞추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기금의 각 계정별 재원과 용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기금의 관리·운용 및 예탁·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80일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31일까지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령검토

- 「지방재정법」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가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영)가 제16(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영)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해 왔던 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를 신설하여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지방재정의 통합적 활용과 효율적 운용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중앙정부는 이미 「국가재정법」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조항에 근거하여 회계와 기금 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던 것과 형평성을 맞춘 것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제1항에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하여 기존에 예비비를 제한 없이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법」제47조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로 개정하고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를 신설하여 제1항은 예산의 이용을 규정하고 제2항은 예산의 이체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동법 제49조(예산의 전용)제3항을 신설하여 예산의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맞추어서 조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른 타당한 조례 제정입니다.

○ 문제점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한 제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종합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와 달리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의 이전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일부 특별회계나 기금에서는 여유재원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재원이 부족하여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방재정도 국자재정처럼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할 수 있도록 하는, 즉 회계·기금 간 칸막이를 낮추어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특별회계 예비비 한도 규정이 불명확하여 예비비를 제한 없이 편성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다한 예비비 편성을 제한하고 남은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의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예산의 전용 금지 사유를 적시하고, 이용·이체·전용에 대한 사후 장치로 예산의 이체나 전용이 있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은 시기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유통기능을 가진 기금이고,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와 이를 재정용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는 '통합관리기금'은 기금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유통기능을 가진 기금입니다. 시기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유통기능과 동일 회계연도 내 기금별 재정 여건

에 따른 자금유통기능이 이원화 되어 있어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통합성 증진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두 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런 필요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제정이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기초를 포함해서 64개 자치단체입니다. 그 중 광역은 경기도와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5개, 기초는 강원도 강릉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를 포함한 59개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의원 9명, 출석의원 5명 만장일치 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